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안내문

h-well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 절차



필수서류
수령



장기요양기관
찾기



장기요양기관과
급여 계약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납부



장기요양급여 종류

❗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로 구분되며 중복하여 이용할 수 없으나, 특별현금급여 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는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
가
급
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장기요양요원)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합니다.



방문간호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주·야간
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인지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합니다.(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단기보호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인지훈련도구를 활용한 인지자극활동 제공, 식사준비, 개인위생활동 등의 일상생활을 수급자와 함께 수행하며 남아있는 신체·인지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합니다.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합니다.

시
설
급
여



노인요양
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합니다.(치매 전담형 노인 요양공동생활가정포함)

특
별
현
금
급
여

가족
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벽지지역 거주,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주·야간보호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종일 방문요양, 단기보호급여),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 3~5등급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종일 방문요양) 1회당 12시간 이상 수급자의 가정에서 요양보호사가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연간 20회(10일, '24.1월부터) 이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비용의 본인부담 비율 / 재가급여 월 한도액 ('24.1.1.기준)

- 본인부담 비율**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총 급여비용의 일부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

구분	일반대상자	40%감경대상자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재가급여·복지용구	15%	9%	6%	면제
시설급여	20%	12%	8%	

- 월 한도액** 한 달(매월 1일~말일)동안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 금액
-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경우 초과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등급	월 한도액 (원)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40%감경대상자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1등급	2,069,900	310,480	186,290	124,190	면제
2등급	1,869,600	280,440	168,260	112,170	
3등급	1,455,800	218,370	131,020	87,340	
4등급	1,341,800	201,270	120,760	80,500	
5등급	1,151,600	172,740	103,640	69,090	
인지지원등급	643,700	96,550	57,930	38,620	



재가급여비용 ('24.1.1.기준)

방
문
요
양

급여제공시간	금액(원)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40% 감경대상자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30분 이상	16,630	2,490	1,490	990
60분 이상	24,120	3,610	2,170	1,440
90분 이상	32,510	4,870	2,920	1,950
120분 이상	41,380	6,200	3,720	2,480
150분 이상	48,250	7,230	4,340	2,890
180분 이상	54,320	8,140	4,880	3,250
210분 이상	60,530	9,070	5,440	3,630
240분 이상	66,770	10,010	6,000	4,000

방
문
목
욕

구분		금액(원)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40% 감경대상자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 내 목욕	84,670	12,700	7,620	5,080
	가정 내 목욕	76,340	11,450	6,870	4,58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7,670	7,150	4,290	2,860

급여제공시간	금액(원)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40% 감경대상자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15분 이상~30분 미만	40,760	6,110	3,660	2,440
30분 이상~60분 미만	51,110	7,660	4,590	3,060
60분 이상	61,490	9,220	5,530	3,680

등급	금액(원)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40% 감경대상자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1등급	70,500	10,570	6,340	4,230
2등급	65,280	9,790	5,870	3,910
3등급	60,310	9,040	5,420	3,610
4등급	58,720	8,800	5,280	3,520
5등급	57,110	8,560	5,130	3,420

▶ 등급별 1일당 비용, 월 9일 이용가능,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

급여제공시간	등급	금액(원)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40% 감경대상자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1등급	39,810	5,970	3,580	2,380
	2등급	36,850	5,520	3,310	2,210
	3등급	34,020	5,100	3,060	2,040
	4등급	32,470	4,870	2,920	1,940
	5등급 인지지원등급	30,920	4,630	2,780	1,85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1등급	53,360	8,000	4,800	3,200
	2등급	49,420	7,410	4,440	2,960
	3등급	45,620	6,840	4,100	2,730
	4등급	44,070	6,610	3,960	2,640
	5등급 인지지원등급	42,500	6,370	3,820	2,55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1등급	66,360	9,950	5,970	3,980
	2등급	61,480	9,220	5,530	3,680
	3등급	56,760	8,510	5,100	3,400
	4등급	55,210	8,280	4,960	3,310
	5등급 인지지원등급	53,640	8,040	4,820	3,210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1등급	73,110	10,960	6,570	4,380
	2등급	67,720	10,150	6,090	4,060
	3등급	62,570	9,380	5,630	3,750
	4등급	61,000	9,150	5,490	3,660
	5등급 인지지원등급	59,450	8,910	5,350	3,560
13시간 초과	1등급	78,400	11,760	7,050	4,700
	2등급	72,630	10,890	6,530	4,350
	3등급	67,100	10,060	6,030	4,020
	4등급	65,540	9,830	5,890	3,930
	5등급 인지지원등급	63,990	9,590	5,750	3,830

▶ 치매 전담실 급여비용 별도,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 휴일·야간 가산 적용



시설급여비용 ('24.1.1.기준)

노인요양시설

구분	등급	금액 (1일당, 원)	월 금액 (30일 기준)	본인부담금(30일 기준)		
				일반 대상자	40% 감경대상자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요양보호사수 입소자 2.3명당 1명 이상	1등급	84,240	2,527,200	505,440	303,260	202,170
	2등급	78,150	2,344,500	468,900	281,340	187,560
	3등급	73,800	2,214,000	442,800	265,680	177,120
요양보호사수 입소자 2.3명당 1명 미만	1등급	80,630	2,418,900	483,780	290,260	193,510
	2등급	74,810	2,244,300	448,860	269,310	179,540
	3등급	68,990	2,069,700	413,940	248,360	165,570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급여비용 별도,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

노인요양 공동 생활 가정

등급	금액 (1일당, 원)	월 금액 (30일 기준)	본인부담금(30일 기준)		
			일반 대상자	40% 감경대상자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1등급	71,010	2,130,300	426,060	255,630	170,420
2등급	65,890	1,976,700	395,340	237,200	158,130
3등급	60,740	1,822,200	364,440	218,660	145,770

▶ 치매전담형 노인공동생활가정 급여비용 별도,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



기타재가급여비용(복지용구) & 특별현금급여비용(가족요양비)

복지 용구

연 한도액 1인당 연간 160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가능(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

▶ 연 한도액(160만원)을 초과하여 이용한 금액은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가족 요양비

월 지급액 매월 해당 수급자에게 229,070원 지급

▶ 가족요양비 수급자가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경우 해당 급여비용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기타 안내 사항

내 손안에 장기요양 (통합)	장기요양기관 찾기	복지용구 검색	급여이용 안내책자	급여비용 계산	장기요양인정서 등 재발급

! 요양보호사와 수급자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 급여계약 시 수급자 요양보호사의 권리와 의무, 상호존중을 명시한 '상호협력동의서' 작성을 권고합니다.
- 수급자·가족은 "요양보호사님" 호칭을 사용합니다.('아줌마'라고 부르시면 안 됩니다.)
- 요양보호사는 "○○○어르신" 호칭을 사용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